

무배당 시티라이프보장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
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
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
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
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6 조 피보험자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후 피보험자는 변경 전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변경 후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변경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 변경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3항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⑦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내지 제4항, 제2조(청약의 철회), 제8조(계약의 소멸),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소멸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6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제17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대중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별표3(대중교통 사고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대중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대중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대중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대중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등급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 생활보장연금

제 1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제1급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한 가지 종목에 해당하는 생활보장연금만을 지급합니다. 또한 새로이 생활보장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지라도 더 이상 생활보장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생활보장연금을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

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15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6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 17 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7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7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9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 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0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1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22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23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2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해약환급

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 지급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보호법에서 정하는 제3차 진료기관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제2회 이후의 생활보장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⑦ 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회 이후의 생활보장연금은 제16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날)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 만기일(단,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 26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7 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 28 조 약관대출

이 계약에서는 약관대출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29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3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4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35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1구좌)

급부 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에게 대중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경우	2,000만원지급
생활보 장연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에게 대중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대중교통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인하여 장애분류 표 중 제1급의 장애상 태가 되었을 경우 (1회한)	지급사유발생일 을 포함하여 5년 간 매년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1,000만원씩 지 급 (5회 확정지급)

- 주) 1.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
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생활보장연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
는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
급하여 드립니다.
3. 생활보장연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